

研究論文

韓國近代 雜誌에 나타난 法律關聯 資料의 경향*

황 민 호**

-
- I. 머리말
 - II. 대한제국기 ‘學會誌’에 게재된 법률관련
논설
 - III. 일제하 중요 민간 발행 잡지의 법률관련
논설
 - IV. 조선총독부 기관지 『朝鮮』의 발행과
법률관련 자료
 - V. 맺음말
-

I. 머리말

우리나라에서의 근대 잡지의 발행은 1897년 대한제국기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물론 대한제국기 이전에도 1892년 2월 선교사들에 의해 창간되었던 『The Korean Repository』와 1895년 2월 동경유학생들이 발행했던 『靑丘會會報』와 1896년 11월 독립협회가 창간했던 『大朝鮮獨立協會報』 등의 잡지가 발간되고 있었지만, ‘韓日合邦’ 이전의 정치적 성향을 담은 근대적 잡지의 발간은 대한제국기 이후 각 지역에서 조직되었던 學會의 ‘學會誌’ 형태로 발간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시기 잡지의 법률관련 논설은 주로 근대 법학의 내용을 소개하거나 법학의 중요성을 일반인들에게 계몽하는 글이며,¹⁾ 특히 대한제국의 정치적 위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073-BM1020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한국근대사 전공
 1) 崔鍾庫, 『韓國法學史』(博英社, 1990).

기 속에서 근대적 국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개된 憲政體制와 관련된 상당수의 논설이 게재되어 있었다.²⁾ 따라서 대한제국기의 각 학회지에 게재되었던 憲政·法律관련 논설의 경향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근대 초기 한국사회가 서구적인 법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다양한 측면의 한 부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韓日合邦’을 전후하여 일제는 국내의 언론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1907년 4월 이른바 ‘新聞紙法’을 제정한 이래 시기별로 保安法·制令號·治安維持法을 적용하여 그 탄압의 강도를 높여 갔다.³⁾ 비록 1920-1930년대 후반까지는 상대적으로 잡지의 발간이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전시통제기인 1937년에는 언론통제가 강화되어 1930년 8월 10일 『東亞日報』와 『朝鮮日報』가 동시에 폐간되는 극단적인 탄압의 국면을 맞고 있었다.⁴⁾

또한 1941년에 들어서면 일제는 「言論·出版·集會·結社等臨時取締法」(법률 제97호)과 「言論·出版·集會·結社等臨時取締法施行規則」(內務省 제40호)을 제정하였는데 일본 스스로도 이 법령에 대해 ‘戒嚴을 대신해서 戰時下에서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大使命을 띤 것’이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언론통제법을 시행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였다.⁵⁾

이러한 분위기에서 일제시대에 민간 발행 잡지의 경우는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으며, 법률 관련 논설의 대부분은 총독부가 제정했던 법령에 대해 그 성격을 해설하거나 법령자체를 소개하면서 문제점들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1937년 7월 중 일전쟁이 발발하자 국내의 민간잡지들은 극단적인 친일화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민간 잡지들에 수록된 법률관련 논설의 경향을 분석해 보는 것은 조선총독부의 조선에 대한 법률적 지배가 나타나고 있던 식민지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柳永烈, 「한국에 있어서 근대적 政體論의 변화과정」, 『國史館論叢』103(2003, 12).

3) 鈴木敬夫, 『法을 통한 朝鮮植民地支配에 관한 研究』,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1999).

4) 鄭晉錫, 『한국언론』(나남신서, 1990).

5) 宮澤俊義, 「言論·出版·集會·結社等臨時取締法施行規則」, 第78帝國議會 『新法律の解説』, 30쪽, 鈴木敬夫, 앞의 책, 318~319쪽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우선 대한제국기의 잡지에서 나타나는 법률관련 논설의 대체적인 경향과 함께 헌정체제와 관련된 법률관련 논설의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일제하 민간에서 발간된 잡지에 나타나는 법률관련 논설의 경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경우 비교적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치안·농업·경제법령 관련 논설과 1930년대 후반 이후에 강화되었던 전시통제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조선총독부가 발행했던 機關誌 『朝鮮』에 게재되었던 법률 관련 논설과 관련기사의 경향과 조선총독부 기관지의 체제상의 변화를 관계 법령의 검토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데,⁶⁾ 본고의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한국사회가 근대적 법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사회적 특징과 그것이 일제 치하를 겪으면서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식민지적 왜곡현상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료적 토대를 형성하는데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 대한제국기 ‘學會誌’에 게재된 법률관련 논설

1. 중요잡지의 법률관련 논설의 경향

대한제국기에 들어 본격적으로 발행되었던 우리나라의 잡지는 1910년 이전에는 주로 각 지역별 학회의 기관지적 성격을 갖는 잡지들을 중심으로 약 40여종의 잡지가 발간되고 있었는데,⁷⁾ 대체로 일제의 정치적 억압 속에서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1904년 7월 일제는 朝鮮駐劄軍 사령관의 명의로 신문의 내용이 치안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이를 정지시키고 관계자를 처벌할 것과 신문의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검열을 실시할 것 등을 주장하는 內訓을 대한제국 外部에 통고하였으며,⁸⁾ 1907년 4월에는 ‘신문지법’을 제정하여 한국의 언론을 장

6) 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 經濟研究室 編, 『朝鮮彙報 分類總目錄(1935)』.

7) 舊韓末부터 일제시기 잡지의 종류와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황민호, 「일제의 식민지언론정책과 법률관련 논설의 경향」, 『정신문화연구』91(2003) 여름호 참조.

8)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7, # 8226, 「京城內外日本軍警察實施通告」.

악해 가고 있었다.9)

1906년 7월에 창간되었던 『大韓自強會月報』는 1907년 8월 대한자강회가 치안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완용 내각에 의해 해산 당하자 그 한 달 전인 7월에 통권 13호로 정간되었는데,10) 이 시기 대부분의 학회지들이 대체로 통권 20호를 넘기지 못하고 중간되고 있었던 것은 각 학회들이 일제에 의해 정치적 탄압을 받게 되면 소속 학회지도 따라서 중간되는 상황의 반영이었던 생각된다.

이 시기에 출간되었던 대표적인 학회지로는 서우학회의 기관지인 『西友』를 비롯하여, 『西北學會月報』·『湖南學報』·『畿湖興學會月報』·『嶠南教育雜誌』·『大韓興學報』·『法學協會雜誌』11)와 일본에서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太極學報』와 『大韓留學生學報』 등이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정치·교육·문화를 중심으로 계몽주의적 관점에서의 언론활동에 주력하고 있었다.

당시의 잡지에 나타나는 법학 관련 논설의 특징에 대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시기의 각 잡지에서는 法學·法律學·法律概論·民法·國際公法·憲法 등을 제목으로 하는 논설들이 자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근대적 법학이 도입되는 시기에 애국계몽계열의 지식인들이 법학 자체에 대한 이해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12)

실제로 ‘法治와 법률의 중요성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이 연설회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1907년 1월 『西友』 제5호에 게재되었던 ‘時報’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합연설회 : 本日 下午 1 시부터 國民演說臺에서 紳士諸氏가 法律演說會를 개하였는데 演題와 辯士의 氏名이 如左함. 尹孝定, 人權은 不可不尊重·廉仲模, 民不信法의 原因·李冕宇, 檢事의 職權·洪在祺, 民不知法의 弊害·俞承兼, 法律과 輿論·鄭雲福, 法官의 持心·全德基, 法律은 治安의 機關·金明濬 恩

9) 「신문지법을 평론함」, 『帝國新聞』 1907. 8.8

10) 汀霞, 「朝鮮新聞發達史」, 『新東亞』, 1934. 5. 55 쪽

11) 법학협회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최중고, 「한말과 일제하 ‘법학협회’의 활동」, 『애산학보』2(1982). 참조

12) 이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한국근대잡지의 내용은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http://kuksa.nhcc.go.kr>)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澤은 可均不可偏·姜琬熙, 生命財産의 如何保護·吳世昌, 腐敗한 司法은 文明의 讎敵¹³⁾

위의 내용은 당시 각 연사들의 강연 제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제목만으로도 당시 지식인들이 법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당시의 지식인들은 근대 법학이 국민국가 건설을 위해 유용한 학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1908년 3월 15일에 조직되었던 법학협회의 ‘창립취지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법학협회에서는 법률은 新學이며, 實學인 동시에 법률을 討究하여 법률적 사상이 발휘되면, 治國의 術策과 生活의 法則 등이 존재함으로써 국가의 富強과 個人의 康樂이 모두 그 안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¹⁴⁾

이외에도 근대적 법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설은 다수가 있었다. 우선 卞惠淵은 「人民은 法律을 解釋할 必要가 有함」이라는 논설을 통해 “人民이 국가단체원의 一員이 된 이상 그 國의 法律을 知得할 必要가 있고, 법률은 해석 여하에 따라서 개인의 權利와 義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상당한 방법을 통해 그것을 해석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주장하였다.¹⁵⁾ 또한 石鎭衡은 「法律의 必要」라는 논설을 통해 “동서양을 막론하고 타국과 견주어 자국의 權利를 缺損치 않고 海陸上에서 雄飛하는 國家는 모두 法治國이요, 法治政治를 하는 나라요 法治國民이다” 라고 함으로써 법률이나 법학이 부강한 근대국가의 건설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었다.¹⁶⁾ 또한 당시 학회지에는 ‘法律의 必要를 論함’¹⁷⁾·‘法學의 職分’¹⁸⁾·‘法律發生의 原因’¹⁹⁾·‘法の 本質을 論함’²⁰⁾·‘法律을 不可不學’²¹⁾ 등의 논설이 게재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글도 역시 근대적 법학 도입

13) 「時報」, 『西友』5(1907), 40 쪽

14) 崔鍾庫, 앞의 책, 392~396쪽.

15) 卞惠淵, 「人民은 法律을 解釋할 必要가 有함」, 『大韓協會會報』6(1-6) (1908. 9). 32~33 쪽.

16) 石鎭衡, 「法律의 必要」, 『大韓協會會報』2(1-2) (1908. 5). 27~28 쪽.

17) 吳政善, 「法律의 必要를 論함」, 『大韓留學生會會報』3(1-3) (1907. 5).

18) 洪正裕, 「法學의 職分」, 『畿湖興學會月報』9(2-3) (1909. 4).

19) 韓光鎬, 「法律 發生의 原因」, 『法政學會』1(1-1) (1907. 5).

20) 蔡基斗, 「法の 本質을 論함」, 『大韓學會月報』1(1-1) (1908. 2).

21) 中岳山人, 「法律을 不可不學」, 『大韓協會會報』7 (1908. 10). 특히 이 논설에서는 “법률이란 血脈

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던 논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 시기의 법학 관련 논설에는 民法과 관련된 글도 상당수 보이고 있는데 ‘民法叢論’²²⁾·‘民法講義 概要’²³⁾ 등을 제목으로 하는 논설들이 대체로 민법의 개념이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대한자강회의 부회장이었던 尹孝定은 「民法과 刑法의 區別」에서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정한 公法이고, 민법은 人民 상호간의 權利義務를 정한 私法이다. 그러나 형법이 규정한 사항 중에도 私益에 관한 것이 있고, 民法이 규정한 사항에도 공익에 관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민법은 법률의 명문이 없더라도 재판관은 ‘條理와 慣習을 參酌·適用 하여 재판을 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는 1896년 明治 29년 에 현행 민법을 발표하였는데 실로 1146조에 달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²⁴⁾

‘大韓協會報’ 제3호에 金陵居士라는 필명으로 게재된 ‘國家의 民事責任’이라는 논설에서는 관리의 직무상의 행위는 국가를 대표하는 행위임으로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일본의 현행법이 실시하고 있던 국가에 대한 損害賠償이나 損失補償 등의 법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었다.²⁵⁾ 그런데 국가를 상대로 한 민법규정에 관한 이러한 논의는 한국사회가 개항이후 계속되어 온 개화운동의 진전을 통해 근대적 신분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당시의 논설들 중에는 ‘國際公法’²⁶⁾·‘國際公法論’·‘平時國際國法論’과 같은 논설도 다수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대한제국기의 정치적 상황에서 국제공법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의 지식인들은 국제공법이 ‘不如 大砲一門’이라 하여 법률로서 인정하기 어렵다는 俗說과 함께 국제법을 非法律 로 보는 서양의 법 이론을 소개하면서 국제공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으며,²⁷⁾ 국제공법이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과 같아 國家人民에 대하여 잠시라도 缺乏되는 것이 불가하며... 국가인민의 생명을 扶植하는 藥石이며, 無道不公한 強暴을 防禦하는 干屏 이라 할 것 이라고 역설하기도 하였다

22) 李鍾麟, 「民法總論」, 『大韓協會會報』9(1-9) (1908. 12).

23) 朴聖欽, 「民法 講義 概要」, 『西友』 (1907. 6).

24) 尹孝定, 「刑法과 民法의 區別」, 『大韓自強會月報』11 (1907. 5).

25) 金陵居士 「國家의 民事責任」, 『大韓協會會報』3 (1908. 6).

26) 鄭喬, 「國際公法」(續), 『少年韓半島』2(1-2) (1906. 12).

간의 전쟁 등과 같은 분쟁을 조절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점에 있어서 의의가 있다는 인식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었다.²⁸⁾

이밖에 ‘治外法權 및 領事裁判權의 差異²⁹⁾·東洋拓植會社 設立이 我國 經濟狀況에 미치는 影響³⁰⁾을 제목으로 한 논설도 보이는데, 이것은 일제의 국권침략에 대한 경계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였다. 다만 ‘私立學校令의 說明³¹⁾과 같은 글은 漢城師範學校 강당에서 사립학교령을 반포한 이유에 대해 연설을 했던 일본인 學部次官의 연설문의 개요를 그대로 採錄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당시가 통감정치 하였다는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대한제국기의 애국계몽계열에 속해있던 지식인들은 대체로 일제로부터의 국권침탈의 위기 속에서도 법률이나 법학, 혹은 법치주의에 대해, 근대국가형성에 필요한 학문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법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겠다.

2. ‘憲政體制’에 관한 논설의 경향

대한제국기 애국계몽계열의 지식인들은 국권회복을 위한 실력양성의 일환으로 ‘憲政體制³²⁾에 관한 논의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우선 이들은 인민의 自由란 皇天이 인간에게 부여한 것이고 인간의 大小強弱은 다르나 “천부자유권은 동일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³³⁾ 뿐만 아니라 民은 국가전체의 주인이기 때문에 ‘人民意志’의 代表인 정부는 주인의 동의를 얻어 국사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즉 당시의 지식인들은 국가와 국민을 동등한 위치에서 인식하는 근대적 국민국가관의 일면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지식인들은 정당정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정한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27) 石鎮衡, 「平時國際國法論」, 『大韓自強會月報』13 (1907. 8).

28) 李承瑾, 「國際公法論」, 『大韓留學生會會報』2(1-2) (1907. 4).

29) 趙天植, 「治外法權 及 領事裁判權의 差異」, 『法學協會雜誌』1(1-1) (1908. 11).

30) 朱定均, 「東洋拓植會社의 設立이 我國經濟 狀況에 及하는 影響」, 『法學協會雜誌』1(1-1) (1908. 11).

31) 「私立學校令의 說明」, 『西北學會月報』7(1-7) (1908. 12).

32) 柳永烈, 「한국에 있어서 근대적 政體論의 변화과정」, 『國史館論叢』103 (2003. 12).

33) 南宮湜, 「自由論」, 『大韓自強會月報』, 9호, 9쪽.

정치상으로 동일한 ‘主義’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근대적 정당은 과거 사회에害가 많았던 ‘朋黨’과는 다른 것이며, 정부에서 비록 責任內閣을 조직한다 할지라도 정당이 完全치 못하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我韓)에서도 정당이 필요한데 정치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된 정당은 외국의 保護政治 下에 있을 지라도 統監府의 權力이 방해하지 못할 것이며, 이를 방해하고 해산한다는 것은 人民의 자유를 무시하고 국가의 輿望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정치활동에 대한 통감부의 간섭과 통제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³⁴⁾ 이러한 인식 하에서 당시의 지식인들은 오늘날의 세계에서 “정당 없는 입헌국가 없고, 정당 있는 전제국가는 없다”라고 함으로써 정당을 통한 입헌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³⁵⁾

한편 애국계몽계열의 지식인들은 專制政治의 대안으로 입법정체를 주장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尹孝定은 입헌정치의 정신은 君民同治·上下一致로 萬機를 公議에 의해 결행하는 것에 비해, 전제정치는 君權이 無限하고 民權이 不在하며 운영하는 機關은 군주와 귀족관료의 私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윤효정은 露日戰爭에서 일본은 舉國一致하고 러시아는 內亂紛起했던 것처럼 현실정치에서 보아도 專制보다 立憲政體가 우수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³⁶⁾

대한협회회보 편찬위원이었던 金成喜의 경우는 구미열강의 국민이 세계상에서 일등국민이 된 것은 “전제를 변하여 입헌을 하고 국민을 국가의 주인으로 삼아 국가의 일을 맡도록 한 때문”이라고 주장한 후 우리도 憲法의 발포와 國會의 설립을 추진하여 國民國家를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하였다.³⁷⁾ 입법정치의 특질에 대해서도 “代表全數國民호야 爲統一政體事, 君權民權을 法典上制限事, 立法部之權利를 保維事, 行政官之行爲를 監督事”라고 하는 네가지의 특징을 지적하였는데 그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의 지식인들이 입헌대의제 혹은 입헌 군국주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³⁸⁾

이러한 인식하에서 애국계몽계열의 지식인들은 영국을 입헌군주제의 모범적인

34) 安國善, 「政黨論」, 『大韓協會會報』 3호 (1908. 6), 24~26 쪽

35) 金成喜, 「政黨의 責任」, 『大韓協會會報』 3호 (1908. 6), 21~24쪽.

36) 尹孝定, 「專制國民은 無愛國思想論」, 『大韓自強會會報』 5호 (1906. 11), 21 쪽

37) 金成喜, 「政黨의 事業은 國民의 責任」, 『大韓協會會報』 1호 27~28 쪽

38) 金成喜, 앞의 글 참조.

모델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元泳義는 「政治의 進化」라는 글에서 “장래 정치의 지극한 정도는 헌정과 민주의 완비 여부에 있으며, 헌정의 始祖인 영국의 입헌정체는 오늘날 완전무결한 상태를 이루어 타국에 비해 우월하다”고 주장하였다.³⁹⁾ 金成喜의 경우도 영국을 헌정의 母國이라 지칭하면서, 문명국가의 헌법은 민권을 보장하고 人民參政之權을 허용하고 군주의 神聖地位를 존중하여 책임지는 바 없게 하는 것 등을 중요 골자로 하며, 안으로 헌정기관이 완비되면 밖으로 국가주권이 스스로 완비된다고 하였다.⁴⁰⁾ 요컨대, 대한제국기에 헌정체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대한협회나 대한자강회 계열의 지식인들은 국민국가 건설론과 관련하여 대체로 영국형 입헌대의제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은 입헌대의제에 의한 국민국가의 건설이 국민의 자유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자강독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⁴¹⁾

대한제국기라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당시의 지식인들은 입헌군주제를 현실적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민주공화제가 국민국가건설을 위한 이상적인 政體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대한자강회의 평의원이었다는 薛泰熙는 「法律上의 人權義」라는 논설에서 군주가 주권을 가지고 입법권을 독점하는 군주제에 비해, 대통령과 의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공화제가 가장 우수하고 진보된 정치체제라고 주장하였다.⁴²⁾ 元泳義도 민주공화체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참정과 민권보장이 가능한 ‘最美의 政體’라고 평가하였으며,⁴³⁾ 西北學會月報의 자유기고가 선우순도 ‘國家의 概要’라는 논설에서 전인민의 의지가 독립고유의 最高權이 될 경우 이를 民主共和制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⁴⁴⁾ 이 시기 항일운동을 위한 비밀결사 조직이었던 新民會의 경우 그 ‘通用章程’과 ‘趣旨書’를 통해 공화제를 주장하기도 하였다.⁴⁵⁾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한제국기 합법적인 공간에서의 헌정체제에 관한

39) 元泳義, 「政治의 進化」, 『大韓協會會報』, 7호, 26쪽(대한협회보 편찬위원)

40) 金成喜, 「國家意義」, 『大韓自強會月報』, 13호, 41쪽

41) 柳永烈, 앞의 논문, 17쪽

42) 薛泰熙, 「法律上 人權義」, 『大韓自強會月報』, 9호, 12~13쪽

43) 元泳義, 「政體概論」, 『大韓協會會報』, 9호, 12~13쪽

44) 선우순, 「國家論의 概要」, 『西北學會月報』, 12호, 9~10쪽

45) 柳永烈, 앞의 논문, 19쪽

논의에 있어서 당시의 지식인들은 표면적으로는 입헌군주제의 헌정체제를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공화제정체에 의한 국민국가의 건설을 보다 선호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시기의 정치적 현실 속에서 공화제에 관한 주장은 비밀결사였던 新民會에 의해 주장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3·1운동 이후 국내외에서 출현한 모든 임시정부가 일관되게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고 있었던 것은 당시 지식인들의 이러한 경향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III. 일제하 중요 민간 발행 잡지의 법률관련 논설

일제하 국내에서 발행된 ‘민간잡지’는 종류와 내용에 있어서 다양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이 시기의 잡지에서는 대한제국기 이후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헌정체제에 관한 논의는 찾아 볼 수 없으며, 조선총독부가 제정했던 법령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일제는 한일합방 이후 국내잡지들에 대해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었던 新聞紙法의 적용을 극도로 제한하였으며, 애국계몽운동계열의 잡지들은 한일합방 이전에 이미 모두 폐간시키고 있었다.⁴⁶⁾

이 시기에 발행되었던 잡지들은 『天道教會月報』·『侍天教月報』·『朝鮮佛教月報』·『惟心』·『經學院雜誌』·『中央青年會報』·『公道』 등과 같은 종교계통의 잡지가 대부분이었으며, 일본 유학생들이 발행하던 『學之光』과 『女子界』 등의 잡지가 있기는 하였지만, 이들은 대부분 종교나 사회문제에 관한 간단한 논설을 게재하고 있을 뿐 법률이나 법학에 관한 논설은 거의 게재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법학전문지였던 『법학계』가 1915년 5월 10일 普城學校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법학협회지』의 후신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⁴⁷⁾ 1919년에는 京城法學專門學校 校友會에서 발간한 「六曹」가 창간되었다.⁴⁸⁾

46) 鄭晉錫, 『韓國言論史研究』(一潮閣 1983), 123~124 쪽

47) 최종고, 위의 책, 422쪽.

48) 이밖에 1915년부터 1917년까지 法律論講社에서 발간한 『法律論講』이라는 잡지가 총 25 호가 발간되었다고 한다. 『韓國法學史』, 391~462 쪽 참조

한편 3·1운동 이후 일제의 언론통제정책의 유형이 달라지자 잡지의 창간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는데, 사회주의사상의 유입으로 인해 잡지계의 사상적 경향도 일정하게 구분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1930년대 후반까지 계속되고 있었다.⁴⁹⁾ 뿐만 아니라 1920년대에는 言論誌나 思想誌 등이 나타나면서 법률관련 논설의 경우도 과거에 비해 체계적인 논리구조를 갖추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1930년대에 들어서는 『新東亞』·『朝光』·『中央』과 같이 신문언론이 발행하는 잡지들이 나타나 보다 우수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잡지언론의 사회적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⁵⁰⁾

1920년대 이후의 민간잡지에 자주 게재되었던 법률관련 논설은 치안·농업 혹은 경제 관련 분야의 것들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 잡지에서 보이는 법률관련 논설의 논의 구조는 특정한 주제에 대해 논의가 집중되기보다는 종교⁵¹⁾·교육⁵²⁾·언론⁵³⁾·농업⁵⁴⁾·경제·산업분야⁵⁵⁾ 등에서 조선총독부가 제정했던 법령의 내용을 소개하거나 비판하는 논설들이 단속적으로 게재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이 시기 민간 잡지가 비록 그 종류의 다양성에 있어서는 과거에 비해 진전된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정치적으로는 주관성이 강한 논설을 제기할 수 없는 현

49) 이 시기에 발행되던 대표적인 잡지로는 『東明』·『東光』·『我聲』·『共濟』·『新天地』·『新生活』·『開關』·『思想運動』·『理論鬭爭』·『現段階』·『批判』·『全線』·『活泉』·『神學世界』·『新人間』·『東學之光』·『彗星』·『佛教』 등이 있었다.

50) 韓國雜誌協會, 『韓國雜誌總覽』(1972) 참조

51) 編輯室, 「宗教에 대한 法令」(1), 『카톨릭青年』21(1935. 2).

52) 一記者, 「教育令 改正에 就하여」, 『儒道』1(1-1)(1921. 2); 「朝鮮教育令 內容, 學務局長 『時事評論』1(1922. 4); 「朝鮮教育令」, 『時事評論』(1922. 4).

53) 「불은 꺼도 모기는 있다-新聞紙法 出版法 改正建議에 關하여」, 『東明』31(2-14)(1923. 4); 梁潤植 「新聞法律講釋」, 『鐵筆』1-1(1930).

54) 李健赫, 「米穀自治管理法과 專賣問題의 前途」, 『朝光』9(2-7)(1936. 7); 朴用來 「重要 肥料業 統制法」, 『朝光』9(2-7)(1936. 7); 又 正, 「朝鮮臨時肥配統制令 공포」, 『朝鮮農業』2(1938. 2); 辛泰嶽 「農地調停法案에 對하여」, 『批判』6-6(1938. 6); 「朝鮮 穀物檢査 施行規則 中 改正」, 『朝鮮農業』7(1938. 7).

55) 裴成龍, 「勞動組合法案과 前途」, 『三千里』3-2(1931. 2); 陳榮喆 「流産된 勞組法案」, 『慧星』2-1(1931. 4); 辛泰斌 「鑛業令과 鑛害問題」, 『朝光』1(1-1) (1935. 11); 辛泰嶽 「鑛業令改正의 必要」, 『新朝鮮』5-1(1936. 1); 朴用來 「重要産業統制法과 조선에 實施問題」, 『朝光』5(2-3)(1936. 5); 木野藤雄 「朝鮮 産金令 解説」, 『朝鮮鑛業』2-10(1937. 10); 「9월부터 실시하는 朝鮮鑛業警察規則」, 『朝鮮鑛業』3-2(1938. 2); 「重要鑛業增産法案」, 『鑛業朝鮮』3-3 (1938. 3).

실적 억압구조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당시 국내에서 발행되던 잡지들은 1925년 5월부터 실시되었던 治安維持法에 대해 비교적 여러 잡지에서 논설을 게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향은 치안유지법에 대해 ‘2重3重의 惡法令’이라고 하거나 ‘思想取締에 대한 辨妄’이라고 비판하고 있었다. 실제로 당시의 논설들은 치안유지법에 대해 제령 위반으로 처리해 오던 순수한 독립운동에 대해 치안유지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정치적 탄압이 얼마나 더 심해졌는가를 옹변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하거나 “대중의 여론이 此法(치안유지법-필자) 시행을 불만족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다” 라고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보안법과 제령 제7호와 치안유지법의 법률상의 상호관계를 검토한 후 정치범죄의 추세를 통계적으로 검토한 논설이 게재되기도 하였다.⁵⁶⁾

이밖에 치안관련 법령으로는 ‘刑事補償法 57) · ‘盜犯防止法⁵⁸⁾ · ‘思想保護觀察令⁵⁹⁾에 대해 법령자체를 소개하거나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설들이 게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변호사 李仁은 형사보상법에 대해 조선에서 이 법 全文이 그대로 시행되겠는 지도 예측하기 어려우며, 그 法文自體를 通讀하여 보면 피해자가 과연 어떤 정도의 만족과 慰藉를 가지고 雪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히 疑問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⁶⁰⁾

또한 사상보호관찰령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적용범위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이

- 56) 李如星, 「治安維持法案(時評), 『思想運動』1-1(1925. 3); 「2重3重의 惡法令, 『開闢』58(1925. 4); 「治安維持法에 대한 政府의 釋義全文, 『新民』(1925. 6); 「治安維持法上 朝鮮獨立運動」 高法判事 野村調太郎, 『普聲』2(1-2)(1925. 6); 「治安維持法の 釋義, 編輯室, 『普聲』2(1-2)(1925. 6); 李學鍾 「思想取締에 대한 辨妄, 『新民』2(1925. 6); 「治安維持法の 實施와 今後的 朝鮮社會運動, 『開闢』60(1925. 6); 「治安維持法에 대하여, 李仁, 『三千里』2-3(1930. 6); 金世政, 「判例를 통해 본 保安法과 制令 第7號, 『批判』1(1931. 5); 「治安維持法과 朝鮮, 『東光』25(3-9)(1931. 9).
- 57) 「刑事補償法」과 관련된 논설로는 金世斌, 「冤罪者補償法批判, 『新東亞』6(2-4)(1932. 4);, 李仁, 「新年부터 施行하는 刑事補償法과 小作調停法, 『第一線』3-1(1933. 1)의 등이 있으며, 비슷한 시기에 「國家賠償法案」에 대해 논의한 논설의 경우도 실제로는 「刑事補償法」문제와 연결되어 논의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冤罪者의 慰藉 國家賠償法案에 대하여, 金海星, 『新民』(1931. 1).
- 58) 李仁, 「盜犯防止法批判, 『別乾坤』31(1930. 8); 楊潤植 「새로 實行하는 盜犯等 防止法の 解說, 『別乾坤』33(1930. 10).
- 59) 李鍾摸, 「保護觀察令의 適用範圍, 『朝光』16(3-2)(1937. 2); 「12월 20일부터 實施되는 思想犯保護觀察令, 『朝光』20(3-6)(1937. 6).
- 60) 李仁, 「今年 4월에 實施한다는 所謂刑事補償法の 實體, 『彗星』2-2(1932. 2)

법의 시행으로 京城·咸興·淸津·平壤·新義州·大邱·光州에 보호관찰소가 설치되게 되었다고 하면서 특별히 광주보호관찰소의 조직운영에 대해 다루고 있는 記事가 게재되기도 하였다.⁶¹⁾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시기의 잡지들은 일제가 실시했던 치안관련 법률의 내용을 소개하고 일부 그 문제점을 비판하는 논설을 게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독부가 치안관련 법률을 적용하면서 실질적으로 나타났던 사회적 문제나 한계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농업관련 법령에 대한 논설도 다수 보인다.⁶²⁾ 1929년 이후 농업공황의 여파로 국내에서는 ‘小作令’이나 ‘小作立法’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었으며, 당시의 논설들은 그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申相俊은 『中央』에 기고한 「朝鮮農地令의 解説」에서 농업관련 법령이 제정되는 일련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930년의 농업공황의 여파가 급증함에 따라 … 自作農創定制도의 실시 등은 농촌의 피해가 尤甚하여 그대로 坐視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것이었다. … 1932년 2월에는 朝鮮小作調停令이라는 것을 실시하여 소작쟁의를 妥協互讓으로 해결할 방침을 세웠으나 이는 오직 소작쟁의가 일어났을 때만 調停을 加할 수 있는 現實이라 … 그래서 이러한 쟁의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의미로 朝鮮小作令案을 제정한 것이니 착수 이래 6個星霜을 費한 것이라 … 조선에서는 地主의 利益을 代表하는 反對가 繁盛하여 많은 修正을 가하였고, 또 現해탄을 건너서 수정에 수정을 가하고도 그 法令化를 의심할 만치 반대와 찬성이 區區하였다. … 또한 小作令이라 하면 지주와 小作人을 대립시키는 감도 없지 않다 하여 朝鮮農地令으로 姓名까지 고쳐서 發布하게 되었다.⁶³⁾

61) 崔圭昌, 「今般 設立된 光州保護觀察所」, 『湖南評論』23-8(1937. 8).

62) 金洙, 「小作法 制定의 急務」, 『朝鮮之光』82(10-1)(1929. 1); 宋鎭禹, 「小作 立法의 必要」, 『朝鮮之光』82(10-1)(1929. 1); 鄭基薰, 「小作 立法과 小作農의 自覺」, 『朝鮮之光』82(10-1)(1929. 1); 張利根, 「小作令의 出世를 바라보면서」, 『東學之光』(1933. 11); 金東進, 「小作令 制定과 小作問題의 將來」, 『新東亞』8(2-6)(1932. 6); 裴成龍, 「朝鮮小作令案의 反動性」, 『東光』37(4-9)(1932. 9); 辛泰嶽, 「朝鮮 小作調停令 解説」, 『農民』4-9(1933. 9); 申相俊, 「朝鮮農地令의 解説」, 『中央』2-6(1934. 6); 朴燦一, 「朝鮮 農地令의 要領」, 『湖南評論』1-2(1935. 6).

위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대체로 일제는 1930년대를 전후하여 극단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한 농민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작쟁의 조정법과 ‘朝鮮小作令案’을 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소작령의 경우 6년 동안 국내와 일본에서 커다란 반대에 부딪쳐 수정을 거듭하는 한편 ‘法令化’가 의심될 정도였으며, 법령의 명칭도 지주와 소작인을 대립시키는 감이 있다는 이유로 ‘朝鮮農地令’으로 변경하여 제정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일제의 조선농지령의 입법과정과 내용에 상당부분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밖에 1930년대에 들어서면 ‘銀行令’⁶⁴⁾·‘所得稅令’·‘相續稅令’ 등에 관한 논설이 게재되고 있었는데 「朝鮮 所得稅令과 適用範圍에 대한 一考察」에서는 ‘稅制整理에 의한 派生的 增稅案의 하나’⁶⁵⁾라고 하였으며, 「朝鮮 相續稅令 解說」에서는 ‘조선의 稅制를 정비하기 위하여 총독부에서는 年來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음은 일반에 公知하는 사실 이며, ‘累進稅法을 採用 하였다’⁶⁶⁾고 있는데 이는 조선총독부가 1930년대 전반기 이후 조세제도의 강화를 통해 전쟁비용을 조달하고자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1930년대 후반에 이르면 『內鮮一體』·『國民文學』·『大東亞』·『新時代』 등 극단적인 친일화 경향을 나타내는 잡지들이 출간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일본어로 작성된 기사를 게재하거나 극단적인 친일 논설을 게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大東亞』의 경우는 本誌의 新指標에서 ‘內地人士’와 ‘半島兄弟’를 연결하는 媒介機關이 될 것이라고 자처하였다

1930년대 후반의 법률관련 논설들은 조선인 지원병제도가 실시되는 것에 대해 이는 ‘支那事變 발발 이래 조선인의 애국심의 발로와 南總督의 英斷’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으며,⁶⁷⁾ 총동원법의 발동에 대해서도 ‘국가의 대 목적을 速成하기 위하여 좀처럼 變치 않는 새로운 체제를 세울 필요가 있으며, 국가 총동원법

63) 申相俊, 「朝鮮農地令의 解說」, 『中央』2-6(1934. 6).

64) 一記者, 「朝鮮新銀行詔令」, 『經濟』1(1928. 6); 一記者, 「近近 發表된 朝鮮 新 銀行條令」, 『經濟』1(1-1)(1928. 6); 徐椿, 「普通銀行 關係法令에 대한 所見」, 『朝鮮之光』80(1928. 9).

65) 鄭秀日, 「朝鮮 所得稅令과 適用範圍에 대한 一考察」, 『中央』2-6(1934. 6).

66) 張錫日, 「朝鮮 相續稅令 解說」, 『中央』2-8(1934. 8).

67) 「四月一日부터 實施된 朝鮮人 志願兵制度」, 『朝光』29(4-3)(1938. 3); 「朝鮮人 志願兵令과 改定된 朝鮮教育令」, 『批判』6-4(1938. 4); 「朝鮮人 志願兵令과 改定된 朝鮮教育令」, 『批判』6-4(1938. 4).

은 이 총동원태세의 최고 시행수단인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일본인 相蔣田池의 논설을 게재하여 그 법령자체를 옹호하기도 하였다.⁶⁸⁾ 또한 '戰時行政特例法'을 설명하는 논설에서는 '중요 군수물자의 비약적인 생산력 확충을 위해 행정상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논설을 게재하기도 하였다.⁶⁹⁾ 이밖에도 각종 '統制令'⁷⁰⁾이나 '內鮮一體'·'新體制'·'高度國防體制'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논설들을 반복적으로 게재하고 있었는데⁷¹⁾ 이러한 경향은 전시통제기에 민간잡지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억압적 언론구조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의 잡지들은 일제의 '정신적 동원'⁷²⁾ 정책에 일정하게 이용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IV. 조선총독부 기관지 『朝鮮』의 발행과 법률관련 자료

1920년 7월부터 1944년 12월까지 월간지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었던 조선총독부 기관지 『朝鮮』⁷³⁾은 내용상으로 볼 때 총독부가 제정했던 각종 법규에 대한 해설과 총독부의 정책에 대한 당국자의 聲明이나 發言, 訓示 등이 게재되어 있어서 일부 관보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논설 중에는 조선

-
- 68) 相蔣田池, 「國家總動員法全」, 『朝光』(1938. 12); 白岡, 「國家總動員法の發動」 『批判』6-11(1938. 11); 金誓, 「總動員法の全面的發動과 新聞」, 『朝光』40(5-2)(1939.2); 姜柄順, 「國家總動員法改正에 對하여」, 『朝光』67(7-5)(1941. 5).
- 69) 裴廷鉉, 「臨時農地關係兩法規解說」, 『朝光』92(9-5)(1943. 5).
- 70) 「國民學校敎則案」, 『朝鮮の敎育研究』(1940. 5); 「食量確保의 強力的 統制와 米穀 配給 調停令 公布」, 『朝光』52(6-2)(1940. 2); 裴廷鉉, 「農地關係 兩法令 概說」, 『朝光』66(7-4)(1941. 4); 宮本元, 「朝鮮借地借家調停令의 概要」, 『春秋』2-2(1941); 辛泰嶽, 「朝鮮鑛業令改正의 要領」, 『朝光』71(7-9)(1941. 9); 金光淳, 「商業組合令과 小賣上 問題」, 『朝光』67(7-5)(1941. 5); 「朝鮮金鑛業令改正 內容」, 『春秋』11(2-11)(1941. 12).
- 71) 玄永燮, 「內鮮一體 體內的 朝鮮民衆의 諸問題의 考察」, 『三千里』130(12-3)(1939. 3); 內閣情報部, 「新體制란 무엇?」, 『朝光』62(6-12)(1940. 12); 劉永允, 「高度國防體制的 新法案」, 『春秋』4(2-4)(1941. 5).
- 72) 정해경, 『일제말기 조선인 강제연행사의 역사』(경인문화사 2003), 13~15 쪽
- 73) 『朝鮮』에는 일문판과 한글판이 있었으며, 본고에서는 高麗書林에서 1986년에 출간한 영인본에 게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姜東鎭, 『日帝의 韓國侵略政策史』(한길사 1984), 53~54 쪽

의 역사와 민족성을 문제 삼거나 日鮮融和를 강조하는 글이 상당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보면 ‘朝鮮은 총독부 식민정책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하겠다.’⁷⁴⁾

일제는 1910년 조선을 강점한 후 10월 1일부터 ‘총독부관제’를 발표하고 總督官房과 總務部, 內務部, 度支部, 農商工部, 司法部를 두는 1관방 5부체제를 확립하고 조선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해가고 있었다.⁷⁵⁾ 이 시기 총독부관제의 특징은 내무부, 탁지부, 농상공부는 대한제국시기의 관제를 그대로 존치한 반면 學部는 내무부 안의 1개 局으로 축소된 점인데 이는 일제가 그 지배 초기부터 조선에 대한 愚民化政策을 추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고 하겠다.

『朝鮮總督府月報』(이하 月報)는 이러한 상황에서 1911년 5월 總訓(필자 총독부 훈령) 41호의 규정을 근거로 발간되었는데 그 중요한 규정을 검토해 보면 ‘月報의 발행목적과 체제상의 특징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제1조 조선에 있어서 施政, 産業 其他의 狀況을 蒐錄하기 위해 매월 20일 조선총독부월보를 발행한다.

제2조 월보는 總務部 文書課에서 편찬한다

제3조 월보에 게재할 사항은 左의 區分에 의함. 1. 농업 및 植林 2. 상공업 3. 광업 4. 수산업 5. 무역 6. 운수 및 교통 7. 理財 및 金融 8. 교육 9. 社寺宗教 10. 위생 11. 구휼자선 12. 지방행정 13. 司法 14. 調查資料 15. 通計

제4조 월보에 기재할 材料는 관계의 各部 및 소속부서에서 그것을 集할 것⁷⁶⁾

위의 내용에서 보면 ‘月報’는 조선의 시정, 산업, 기타의 상황을 蒐錄하기 위해 總務部 文書課에서 발행하며, 게재할 기사의 내용은 총독부 내 각부 및 소속부서에서 모집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월보가 총독부의 기관지였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또한 수록 내용에 대해서는 농업, 상공업, 지방행정, 植林 등 15

74) ‘조선총독부월보’에서 ‘조선회보’를 거쳐 ‘조선’으로 잡지의 명칭이 변경되고 발행 주체가 ‘總督府庶務課’에서 ‘總督府官房總務課’과 등으로 변동되는 것은 총독부의 직제개편과 상당부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자세한 언급은 피하였다.

75) 『朝鮮總督府官制』, 勅令 第354號, 『朝鮮總督府官報』, 第28號, 明治43年(1910) 10月 1日

76)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月報』(1-7)(1911. 12.20)

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조선통치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정리하고자 했던 총독부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月報’의 발행 규정은 1913년 11월 총독부령 제518호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1912년 4월 1일에 있었던 총독부의 행정정리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⁷⁷⁾ ‘月報’의 발행·편집체계에도 일부 변화가 있었다.

제1조: 조선에 있어서 施政 기타 제반의 사항을 周知시키기 위하여 每月 1일 조선총독부월보를 발행한다.

제2조: 월보는 官房總務局總務課에서 이를 편찬한다.

제3조: 月報에 掲載할 概目은 아래와 같다. 1. 主要記述, 2. 調査資料, 3. 雜錄, 4. 敍任及司令, 5. 統計, 6. 判決例, 7. 法令 및 通牒

제4조: 월보 편찬을 위하여 編纂委員 數名을 둔다.

제5조: 총무과장은 每月 1일 各編纂委員會를 개최하여 編纂에 관한 打合을 할 것

제7조: 월보는 官房總務局印刷所에서 이를 인쇄한다.⁷⁸⁾

이 시기에 ‘月報’는 우선 ‘조선에 있어서 施政 기타 제반의 사항을 周知시키기 위해’ 발행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의 施政, 産業 기타의 상황을 蒐錄한다고 규정’했던 이전의 발행 목적에 비해 보다 강화된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또한 발행 부서가 총무부 문서과에서 관방총무국 총무과로 변동되었으며, 인쇄처는 관방총무국 인쇄소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총독부의 직제개편과 관련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15개 항목이었던 기재사항이 7개의 ‘概目’으로 축소되어 그 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전에 비해 敍任 및 司令, 判決例, 法令 및 通牒의 항목이 명시되고 있어서 ‘月報’의 官報로서의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이밖에 이 시기에는 ‘月報編纂委員會’가 구성되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총독부가 ‘月報’의 발행을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77)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5(1989. 12).

78) 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 經濟研究室 編, 『朝鮮彙報 分類總目錄(1935)』.

하겠다. 그리고 ‘月報’ 편집위원의 인물과 성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이전 總訓 41호의 규정에 월보에 게재될 자료의 모집을 위해 각 부서에는 소속 부서장이 임명하는 ‘月報 報告主任’을 둔다고 했던 것으로 보아 이 시기 ‘月報’ 편집위원들은 이들과 일정하게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⁷⁹⁾

‘月報’에 게재되었던 법령관련 기사의 경향을 정리해 보면 우선 월보에는 총독부가 제정한 법령에 관한 논설이나 별도의 해설 기사는 별로 보이지 않고 있으며, ‘민·형사판결’·‘법령’ 등을 항목으로 하는 기사들이 정기적으로 게재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일제가 한일합방 초기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했던 중요법령의 내용이나 성격을 총독부의 정책적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月報’에서는 ‘朝鮮慣習에 관한 回答⁸⁰⁾이나 土地를 비롯한 재산권 행사에 관한 民·刑事事件에 대한 ‘判決例⁸¹⁾와 地稅令·市街地稅令·煙草稅令·國稅徵收令 등에 관한 법령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民事事件의 ‘判決例’에 있어서 토지소유권이나 경작권에 관한 내용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제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실시했던 토지조사사업의 영향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稅制와 관련된 법령관련 기사들이 눈에 띄는 것은 일제가 식민지 조선을 운영하기 위한 재정 확보에 주력하고 있었던 1910년대의 상황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⁸²⁾

한편 조선총독부에서는 1915년 2월에 시행된 훈령 제5호를 근거로 ‘월보’를 ‘朝鮮彙報’(이하 ‘彙報’)로 변경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9)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月報』(1-7)(1911. 12.20). 總訓 41호 제5조에 ‘월보보고주임은 奏任官 또는 判任官 중에서 所屬長官이 명하고 그 官氏名을 文書課長에게 通知한다’라고 되어 있다

80) 「法令及通牒(朝鮮舊慣ニ關スル回答)」, 『朝鮮總督府月報』(4-10)(1914. 10). 「法令及通牒(朝鮮舊慣ニ關スル回答)」, 『朝鮮總督府月報』(4-12)(1914. 12)

81) 「判決例(民事-耕作權確認請求ニ關スル件)」, 『朝鮮總督府月報』(4-8)(1914. 8); 「判決例(民事-土地所有權確認及引渡請求ニ關スル件)」, 『朝鮮總督府月報』(4-10)(1914. 10). 이외에 토지와 관련된 民事에 대한 다양한 ‘判決例’가 나타나고 있다

82) 관련 법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法令(地稅令)」, 『朝鮮總督府月報』(4-5)(1914. 5); 「法令(市街地稅令)」, 『朝鮮總督府月報』(4-5)(1914. 5); 「法令(煙草稅令)」, 『朝鮮總督府月報』(4-5)(1914. 5); 「法令(國稅徵收令中改正)」, 『朝鮮總督府月報』(4-5)(1914. 5)

朝鮮彙報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이 大正 4年 3월 1일부터 시행함

朝鮮總督府月報에 관한 규정은 이를 廢止한다.

제1조 조선에 있어서 행정 및 제반 사항을 널리 상세히 알리기 위해 매월 1일 조선회보를 발행함.

제2조 조선회보에 게재할 사항의 概目은 다음과 같다. 1. 敍任 및 司令 2. 行政 3. 財政 및 金融 4. 産業 5. 交通 및 土木 6. 學事 7. 司法 및 警察 8. 研究資料 9. 外國事情 10. 地方通信 11. 雜報 12. 質疑應答 13. 統計 14. 法令 및 通牒 15. 判決例 16. 國語 및 朝鮮語 研究⁸³⁾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총독부에서는 1915년 3월 1일을 기해 ‘彙報’에 관한 규정을 실시하는 동시에 ‘朝鮮總督府月報’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회보’가 ‘조선총독부월보’의 후신임을 알 수 있다 또한 7개였던 게재항목 수가 16개로 늘었으며, 외국사정, 지방통신, 질의응답, 잡보, 국어 및 조선어 연구 등이 새롭게 추가되어 편집체계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변동 중에도 사법에 警察 항목이 추가되는 등 사법과 법률관련 항목은 여전히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彙報’의 경우는 각 권의 마지막에 편찬위원 명단을 밝혀두었는데 총독부 관방총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각 기관의 서기관, 사무관, 경무관, 시학관, 통역관 등이 위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 시기에 이르면 총독부 기관지로서의 ‘회보’의 위상이 비교적 높았음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⁸⁴⁾

한편 ‘彙報’에는 총독이나 각부 장관의 訓示⁸⁵⁾와 중요한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해당 부서 당국자의 논설⁸⁶⁾이 게재되어 있어서 각각의 법령이 갖고 있던 정책적

83) 「朝鮮彙報編纂委員」, 『朝鮮彙報』(1915. 5).

84) 편찬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朝鮮總督府 總務局長 伯爵 兒玉秀雄, 委員 書記官 荻田悅造, 書記官 遠藤柳作, 書記官 今村邦典, 通譯官 菱典靜治, 通譯官 新庄順貞, 事務官 岡今朝雄, 事務官 小田幹治郎, 事務官 田中卯三, 視學官 秋山鐵太郎, 事務官 林茂樹, 書記官 本岡榮次郎, 鐵道局 參事 和田駿, 遞信局 書記官 島田志良, 警務官 玄角仲藏, 勸業模範場 技師 鏡保之助, 中央試驗所 技師 宇野三郎, 編纂事務 囑託 飯島榮太郎 「朝鮮彙報編纂委員」, 『朝鮮彙報』, 1915. 5.1 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85) 「司法官ニ對スル寺內總督訓示」, 『朝鮮彙報』(1915. 8); 「警務部長に對する總督訓示」, 『朝鮮彙報』(1917. 3); 「監獄警務主任會同に於ける司法部長官訓示要領」, 『朝鮮彙報』(1917. 8); 「高等女學校長に對する總督訓示」, 『朝鮮彙報』(1918. 3).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체제상의 변화는 ‘조선’에서도 계속되어 졌던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彙報’에는 ‘朝鮮慣習에 관한 回答’이외에도 과거 조선왕조의 정치제도에 관한 논설들이 다수 게재되고 있는데 이는 일제가 조선에 대한 식민통치 초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慣習調査’⁸⁷⁾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⁸⁸⁾ 뿐만 아니라 ‘휘보’에서는 경찰관련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이는 한일합방 이후 꾸준히 강화되고 있었던 ‘朝鮮警察’의 위상을 반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⁸⁹⁾

그리고 3·1운동의 여파로 1919년 8월 20일 총독부의 관제가 개정되고 이른바 ‘文化統治’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彙報’는 ‘朝鮮’으로 개편되어 발간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⁹⁰⁾

그런데 <표 1>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朝鮮’에 기재되었던 기사의 내용이 시기별로 약간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우선 1921년의 경우에는 그 내용 중에 지배정책이나 사회교화와 관련된 내용이 많았으나 1930년의 경우에는 조선의 사회관습이나 역사·민족성에 관한 것과 산업경제와 관련된 기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필자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총독부 관리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朝鮮’에 수록되었던 기사 내용의 이러한 변화는 ‘朝鮮’이 1920년 7월 발행 이후 총독부 기관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1930년대에 이르면 발행초

86) 荒井賢太郎(度支部長官), 「酒稅令の要旨」, 『朝鮮彙報』(1916. 9); 宇佐美勝夫(內務部長官), 「面制に就て」, 『朝鮮彙報』(1917. 7); 小原新三(農商工部長官), 「米穀檢査規則の改正及大豆檢査規則の制定に就て」, 『朝鮮彙報』(1917. 10); 國分三玄(司法部長官), 「朝鮮刑事令改正の要旨」, 『朝鮮彙報』(1918. 1); 關屋貞三郎(學務局長), 「書堂規則の發布」, 『朝鮮彙報』(1918. 4); 小原新三(農商工部長官), 「林野調査令要旨」, 『朝鮮彙報』(1918. 6); 鈴木穰(度支部長官), 「地稅令改正の要旨」, 『朝鮮彙報』(1918. 8); 鈴木穰(度支部長官), 「煙草稅令の改正に就て」, 『朝鮮彙報』(1918. 8); 鈴木穰(度支部長官), 「地方金融組合令の改正に就て」, 『朝鮮彙報』(1918. 8).

87) 鄭肯植 編譯, 『慣習調査報告書』(한국법제연구원, 2000), 12~13쪽.

88) 「朝鮮舊慣に關する回答：墓位土の處分に關する件」, 『朝鮮彙報』(1915. 3); 淺見倫太郎(高等法院檢事), 「李氏國初の法典」, 『朝鮮彙報』(1916. 4); 淺見倫太郎(高等法院檢事), 「經國大典及其の後の法典」, 『朝鮮彙報』(1916. 5).

89) 김민철, 「식민지통치와 경찰」, 『역사비평』24(1994).

90)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定(改正)」, 朝鮮總督府 令30號, 『朝鮮總督府官報』號外, 大正8年(1919) 8월 20일

기에 비하여 보다 강화된 관주도형 잡지가 되어가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것은 곧 일제의 한국인에 지배정책이 보다 강화된 통제양상을 나타내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91).

<표 1> 1921년과 1930년 『朝鮮』에 게재되었던 기사 내용 분류⁹²⁾

구 분	내 용 분 석	1921	1930
집필자 년인원	총독부 관리	105	132
	일반 일본인	56	31
	외국인	6	0
	일반 한국인	17	1
내용분류	지배 정책	43	21
	외국의 식민정책 및 소개	4	0
	교육·사회사업(社會教化를 포함)	42	10
	사회·풍속·관습·역사·시정·민족성에 관한 것	40	87
	산업경제	25	45
	內鮮融和(선전·역사)	19	9
	在鮮日本人에 관한 것	4	0
기타	20	9	
	계	197	181

<표 2>는 1920년 다시 ‘朝鮮’의 편찬위원으로 활동하던 인물들의 중요 경력사항을 정리한 것인데 위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朝鮮’ 역시 각 부서의 사무관 참서관, 시학관, 통역관 등으로 구성된 편찬위원회를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93) 한편 이들 대부분은 ‘彙報編纂委員’으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는데 이는 ‘朝鮮’이 ‘彙報’의 뒤를 이어 3·1운동 이후 총독부의 機關誌로 개편된 것임을 알 수 있게 하

91) 姜東鎭, 앞의 책, 54~55쪽.

92) 金圭煥, 「植民地下 朝鮮에 있어서의 言論統制의 研究」(姜東鎭 앞의 책 54 쪽에서 재인용, 익명·펜네임으로 게재된 기사는 제외함).

93) 이 표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가운데 ‘직원록 자료 중 조선총독부 직원록 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여기에 이용된 자료는 日本 『職員錄』 중 朝鮮總督府篇과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이라고 한다. 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도 있었으나 그대로 기재해 두었다. 『朝鮮』, 1920. 7. 1자에 실린 명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원문에는 편찬위원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다.

<표 2> 1920년 당시 『朝鮮』의 編纂委員 및 略歷

구분	이름	소속·직위	중요사항
위원장	青木戒三	總督府 總督官房 庶務部[直屬] 部長	文官普通懲戒委員, 李王職職員懲戒委員, 彙報編纂委員長
위원	山口貞昌	總督府 法務局 法務課 事務官, 課長	彙報編纂委員, 社司社掌試驗委員
	小田幹治郎	總督府 總督官房 參事官室 事務官	彙報編纂委員
	丸山鶴吉	總督府 警務局[直屬] 事務官	道警部考試委員, 彙報編纂委員
	上田駿一郎	總督府 學務局[直屬] 視學官	小學校 및 普通學校敎員試驗委員, 彙報編纂委員
	田中卯三	總督府 殖産局[直屬] 事務官	彙報編纂委員
	守屋榮夫		
	篠原英太郎	總督府 殖産局 農務課 事務官 課長	彙報編纂委員
	國友尙謙	總督府 警務局 警務課 事務官 課長	道警部考試委員, 彙報編纂委員
	伊藤武彦		
	渡邊豊日子		
	陶山武二郎	總督府 總督官房 庶務部 文書課 通譯官	彙報編纂委員
	菊山嘉男	總督府 總督官房 庶務部 會計課 事務官 課長	普通試驗委員, 公立學校職員恩給審査委員, 彙報編纂委員
	杉本良		
	安武直夫	總督府 總督官房 庶務部 文書課 事務官 課長	普通試驗委員, 彙報編纂委員, 官報報告主任
	半井清	總督府 學務局 宗教課 事務官 課長	社司社掌試驗委員, 彙報編纂委員
	澤崎修	總督府 總督官房 鐵道部 監理課 事務官	彙報編纂委員
	倉橋誌		
	萩原彦三	總督府 總督官房 參事官室 參事官	彙報編纂委員
	田中三雄		
	富永文一	總督府 內務局 第1課 事務官	彙報編纂委員
矢野義二郎	總督府直屬機關 遞信官署 遞信局 監理課[直屬] 事務官, 課長	彙報編纂委員, 統計主任	

는 것이라고 하겠다.⁹⁴⁾

94) ‘朝鮮’에는 法令과 規則에 관해서만 약 198건의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920년 7월부터 중일전쟁 발발 이전인 1937년 6월까지의 약 89개가 그 이후 1944년 12월까지의 약 109개의 법령관련 기사가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숫자를 통해서 볼 때 ‘조선’은 그 발행 초기

<표 3>의 경우는 전시통제기 이전에 발행되었던 ‘朝鮮에서 2회⁹⁵⁾ 이상 언급된 법령관련 기사의 목록을 정리한 것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몇 가지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이 시기 朝鮮에서는 한국의 농민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農地令이나 小作調停令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그 비중에 있어서는 取引所(증권거래소·필자)令이나 信託業令·漁業令 등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국내의 민간잡지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保安法’이나 ‘治安維持法’이나 ‘保護觀察令’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朝鮮이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였다는 점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밖에 광업령이나 교육령 은행령 등에 관한 법령이 2회 이상 언급되고 있었으며 酒稅令, 所得稅令, 營業稅令 등 각종 稅制令에 관한 해설기사가 게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제 관련 법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총독부의 입장에서 볼 때 식민통치에 필요한 재정기반의 안정적 확충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한편 1937년 7월을 전후하여 본격적인 전시통제기에 들어서면 총독부는 각종 통제법령의 내용과 성격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해 ‘朝鮮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 시기 전시통제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정리한 <표 4>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러한 경향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총독부에서는 1938년 4월 1일 전면적인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重要産業統制法 과 ‘朝鮮臨時肥料配給統制令’ 등의 법령을 실시하여 조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가고 있었다.⁹⁶⁾

뿐만 아니라 <표 4>를 통해서 보면 총독부에서는 중요한 법령을 발표 할 경우 정무총감이나 해당부서 局·課長 명의로 각 법령의 입법취지와 그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표 3>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데 ‘朝鮮에 게재되었던 법령 관련 논설의 이러한 경향은 총독부기관지로서의 ‘朝鮮’의 정치적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었다고도 생각된다.

부터 중일전쟁 이전까지는 법령이나 규칙에 관한 기사의 게재에 있어서 전시통제기 보다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95) 이밖에 2회 게재된 법령으로는 學務局長 渡邊豊日子 「朝鮮室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の發布に就て」, 『朝鮮』220(1933.9); 「實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施行に關する規定發布(彙報) 『朝鮮』224(1934.1)가 있다.

96) 「重要産業統制法施行」 『朝鮮』263(1937.4). 126쪽, 「朝鮮臨時肥料配給統制令公布」 『朝鮮』272(1938.1).

<표 3> 1920.7-1937.6까지 『朝鮮』에 게재된 중요 법령 관련 기사목록

구분	성명·직위	기사 제목	(호수) 및 연도
教育令	柴田 學教局長	教育令改正에 관해서	1920.12
		朝鮮教育令竝附屬法	(84), 1922.2
	水野 政務總監	朝鮮教育令公布에 즈음하여	(85), 1922.3
	松浦鎮次郎 學務局長	朝鮮教育令의 改正에 관하여	(168), 1929.5.
取引所令	齋藤實 朝鮮總督	朝鮮取引所令公布에 즈음하여	(193), 1931.6
		朝鮮取引所令과 其의 運用	(193), 1931.6
	政務總監談	取引所令施行規則等의 發布에 즈음하여	(197) 1931.10
民·刑事令	財務局長談	朝鮮取引所稅令中改正에 대하여	(198), 1931.11
	松寺竹雄 法務局長	朝鮮民事令의 改正에 관하여	(169), 1929.6
	深澤新一郎,	朝鮮民事令의 內容안에 있는 信託法에 관하여	(194), 1931.7
	横田五郎	朝鮮刑事令改正要旨	(96), 1923.3
鑛業令		鑛業令에 의한 新鑛物(彙報)	(133), 1926.6
	惠積眞六郎 殖産局長	鑛業令의 改正에 관하여	(213), 1933.2
農地令	宇垣一成 朝鮮總督	朝鮮農地令公布에 관하여	(228), 1934.5
	渡邊忍 農林局長	朝鮮農地令의 概要	(228), 1934.5
信託業令	林繁藏 財務局長	朝鮮信託業令과 朝鮮無盡業令의 改正에 관하여	(194), 1931.7
	財務局長談	朝鮮信託業令施行規則의 發布에 대하여	(197), 1931.10
	谷多喜磨 朝鮮信託會社 社長	朝鮮信託會社의 設立에 관하여	(214), 1933.3
	財務局長談	五信託會社의 合併에 관하여	(235), 1934.12
漁業令		漁業令施行規則의 改正(彙報)	(153), 1928.2
	今村武志 殖産局長	新漁業令의 發布에 관하여	(166), 1929.3
		朝鮮漁業令	(166), 1929.3
	松村松盛 殖産局長	新漁業令附屬法規의 發布에 관하여	(177), 1930.2
銀行令	草間秀雄 財務局長	銀行令改正에 관하여	(165), 1929.2
		改正銀行令	(165), 1929.2
小作調停令	笠井建太郎 法務課長	朝鮮小作調停令 및 刑事補償法規制定에 관하여	(213), 1933.2
		小作調停令實施 後의 狀況	(218), 1933.7
	增永 法務局長談	朝鮮小作調定令의 改正에 관하여	(250), 1936.3
辯護士法		辯護士規則改正及辯護士試驗規則의 制定(彙報)	(83), 1922.1
	法務局長談	辯護士法改正에 관하여	(252), 1936.5

실제로 1938년 5월 5일부터 ‘국가총동원법이 조선에 적용되자 大野政務總監은 1938년 6월 ‘朝鮮’을 통해 전쟁목적의 달성을 위해 ‘후방에 있어서의 총동원체제의 완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 新法律에 대한 국민들의 각오를 강조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기도 하였다.’⁹⁷⁾

또한 1942년 10월 15일 ‘醫療關係者徵用令 이 실시되자 이에 대해서는 石田厚生局長의 명의로 국민보건과 국력의 消長에 가장 커다란 관계가 있는 의료관계자를 國家總動員上에 필요한 방면에 배치하는 것은 국가적인 요구가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⁹⁸⁾

1944년 11월에 공포된 ‘女子挺身勤勞令 에 대해서도 남자를 대신해서 후방을 지키는 여자의 임무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決戰非常措置에 기초하여 본령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鑛工局長 명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며⁹⁹⁾ 이밖에 ‘徵兵制’의 실시를 정당화하는 다수의 논설이 게재되기도 하였다.¹⁰⁰⁾

한편 ‘朝鮮’은 ‘고무사용제한규칙’이나 ‘석탄배급통제규칙’·‘카바이트배급통제’·‘木材統制’·‘薪炭配給統制’ 등과 같은 물자통제에 관한 규칙이 발표되면 이들 법령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¹⁰¹⁾ 실제로 1940년 7월 20일 ‘鐵鋼需給統制規則’이 공포되자 鐵鋼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영향이 대단히 클 것이라고 강조한 후 통제의 범위와 통제기관과 감독과 벌칙 등의 문제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帳簿記載義務 및 申告義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었다.¹⁰²⁾

또한 1940년 11월 29일에 실시된 석탄배급통제규칙에 대해서는 석탄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영향력이 광범위하고 심각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석탄에 대한 판매와 배급통제의 방법과 통제기관 및 처벌규칙에 대해 비교적 소상

97) 「總動員法施行에 대하여 大野政務總監談發表」, 『朝鮮』277, 1938. 6. 128 쪽

98) 「醫療關係者徵用令施行規則公布」, 『朝鮮』330(1941. 11). 103 쪽

99) 「女子挺身勤勞令公布함」, 『朝鮮』352(1944. 9). 86 쪽

100) 「徵兵制施行に總督談發表」, 『朝鮮』325(1942.6); 「監視に半島青年數千名採用」, 『朝鮮』325, 1942.6 朝鮮軍參謀 磯矢伍郎, 「建軍の本義と徵兵制實行」, 『朝鮮』326(1942.7); 總督府 警務課長 八木信雄, 「徵兵制度施行の意義」, 『朝鮮』326(1942.7); 人文社主幹 崔載瑞 「建徵兵制實施と知識階級」, 『朝鮮』326(1942.7); 毎日新報社 主筆 徐椿, 「徵兵制實施と半島人の感激」, 『朝鮮』326(1942.7)

101) 이밖에 ‘朝鮮’에 게재된 물자통제와 관련된 記事로는 「タイヤ及チユブの配給統制」(彙報), 『朝鮮』287(1939.4); 「皮革の配給統制に關し 穂積殖産局長談」(彙報), 『朝鮮』287(1939.4) 등이 있다.

102) 「鐵鋼需給統制規則の公布」(彙報), 『朝鮮』303(1940.8), 82 쪽

<표 4> 1937-1944까지 『朝鮮』에 게재된 전시통제 관련 중요법령 목록¹⁰³⁾

구분	성명·지위	기사 제목	(호수) 및 연도	
1937		重要産業統制法施行(彙報)	(263), 1937.4.	
1938	穂積殖産局長	朝鮮臨時肥料配給統制令公布(彙報)	(272), 1938.1.	
	大野政務總監	總動員法施行에 대하여大野政務總監談發表(彙報)	(277), 1938.6	
	殖産局長	朝鮮重要鑛物增産令에 대하여 殖産局長談發表(彙報)	(277), 1938.6.	
	警務局長	醫療關係者職業能力申告令施行에 관하여(彙報)	(281), 1938.10.	
	資源課長	學校卒業者使用制限令에 대하여 本府資源課長談(彙報)	(281), 1938.10	
	穂積殖産局長	고무使用制限規則制定에 부쳐穂積殖産局長談(彙報)	(283), 1938.12	
1939		臨時資金調停法施行狀況(彙報)	(283), 1938.12	
	政務總監	朝鮮마그네사이트會社令公布관하여總監談發表(彙報)	(289), 1939.6.	
1940		國民登錄制實施 實施에부쳐(彙報)	(290), 1939.7	
		小作料統制令의 施行(彙報)	(296), 1940.1	
		朝鮮石炭配給統制規則制定(彙報)	(296), 1940.1	
	農振課長 岸勇一	小作料統制令에 부쳐서	(297), 1940.2	
	財務局長	朝鮮産金令의 改正에 관하여 財務局長談(彙報)	(297), 1940.2	
		朝鮮職業紹介令制定(彙報)	(297), 1940.2	
		總動員試驗研究令施行(彙報)	(297), 1940.2	
		總動員物資使用收用令施行規則發布(彙報)	(298), 1940.3	
		朝鮮職業紹介令實施(彙報)	(298), 1940.3	
		纖維工業設備制限規則制定됨(彙報)	(299), 1940.4	
	鐵道局 營業課長 大和田福徳	카바이트配給統制規則公布됨	(300), 1940.5	
	企劃部長	鐵鋼需給統制規則의 公布(彙報)	(303), 1940.8	
	三橋警務局長	朝鮮映畫令實施됨	(303), 1940.8	
	當局發表	雜穀配給統制規則發布됨(彙報)	(303), 1940.8	
	朝鮮總督府當局	住宅建設用資材配給統制令의 實行(彙報)	(304), 1940.9	
	企劃部長	鐵屑等配給統制規則公布(彙報)	(306), 1940.11	
	殖産局長	價格等統制令의 改正에 부쳐殖産局長談(彙報)	(306), 1940.11	
	1941	上罐內務局長	賃金統制令改正됨(彙報)	(315), 1941.8
		金屬類回收令施行規則公布(彙報)	(317), 1941.10	
	港灣運送業統制令施行規則公布(彙報)	(317), 1941.10		
1942	新貝遞信局長談	海運統制令改正公布됨	(326), 1942.7	
	殖産局長	企業整備令公布됨	(326), 1942.7	
	山澤農林局長	木材統制令公布됨	(326), 1942.7	
	農林局長	朝鮮薪炭配給統制規則公布됨	(328), 1942.9	
	石田厚生局長	戰時災害保護法公布됨	(328), 1942.9	
	厚生·學務 兩局長	朝鮮青年特別鍊成令公布	(330), 1942.11	
石田厚生局長	醫療關係者徵用令施行規則公布	(330), 1942.11		
1943	農林局長	朝鮮食糧管理施行規則公布	(341), 1943.10	
司政局長	國民徵用扶助規則發布됨	(342) 1943.11		
1944	政務總監	朝鮮女子青年鍊成所規程制定됨	(346), 1944.3	
	法務局長	朝鮮會社等臨時措置令公布됨	(350), 1944.7	
	鹽田鑛工局長	女子挺身勤勞令公布됨	(352), 1944.9	
	鑛工局長	朝鮮軍需會社法施行規則公布함	944.11 -12(合併號)	

103) 이 표는 휘보에 나타나는 기사 법령관련 기사 가운데 중복되는 것은 1회만 기재 하였으며, 대체로 전시통제적 성격의 법률 목록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당시 전시통제기에 조선총독부가 공포했던 법령의 대체적인 경향성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히 설명하고 있었다.¹⁰⁴⁾

뿐만 아니라 1941년 10월호에서는 ‘金屬類回收令施行規則’에 대해 설명하면서 ‘現下 國防國家의 建設을 위해 해외로부터의 물자 도입에 의존하는 것에서 脫却하고 自給自足體制를 確立하여 戰時 生産力의 維持增強이 緊要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의 제정이 필요했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¹⁰⁵⁾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일제는 국가총동원체제 하에서 한국인에 대한 인력 동원과 물자통제가 이루어질 때마다 기관지 ‘朝鮮’을 통해 이를 정당화하고 그 법규의 내용을 논설 게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각 법령의 입법취지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은 전시통제기 일제가 실시했던 통제법령의 사회적 성격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대한제국기 이후 일제말기까지 국내에서 발간되었던 잡지들에 나타나는 법률관련 자료의 경향과 그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제국기에 발간되던 학회지 중심의 잡지에는 근대적 법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던 애국계몽계열 지식인들의 논설들이 다양하게 게재되고 있었다. 이들은 근대적 법률로서의 법학일반, 국제법·민법 등에 대해 소박하지만 나름대로의 식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애국계몽계열의 지식인들은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에 필요한 헌정체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천부인권과 국민주권 및 민권과 정당정치 필요성 등에 대해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대한제국기에는 입헌군제와 공화제적 헌정체제의 정당성이 함께 논의되고 있었는데 대한제국이 고종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전제왕정 국가였다는 점을 고려할

104) 「朝鮮石炭配給統制規則制定」(彙報), 『朝鮮』296(1940.1).

105) 「金屬類回收令施行規則公布」(彙報), 『朝鮮』317(1941.10).

때 외견상으로는 입헌군주제에 대한 선호의식이 공화제 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신민회와 이후 독립운동지도자들의 정치적 성향에서 볼 때 공화제에 입각한 국민국가의 건설론에 보다 많은 지식인들이 높은 비중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3·1운동 이후 국내외에서 조직된 모든 임시정부에서 일관되게 민주공화제 정부를 채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일제시대의 잡지자료에 대해서는 우선 국내에서 발행했던 민간잡지와 총독부 기관지에 나타나는 법률관련 논설의 경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민간잡지의 경우는 시기별로 상당히 다양한 성격의 잡지들이 발간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관련 논설의 양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 아니었으며, 그 내용 역시 총독부가 제정한 법률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표현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 민간잡지들에 게재되었던 논설들은 교육·언론·사법·경찰·농업·산업·경제·세제 등에 대한 다양한 논설들이 게재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나 종합은 식민지시대의 사회적 흐름을 법률적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총독부 기관지였던 『朝鮮』을 중심으로 『총독부월보』와 『조선휘보』에 나타나는 법률관련 기사와 각각의 잡지들이 총독부의 관제 개편과 맞물리면서 그 내용과 성격을 달리해가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각 시기 잡지에 게재되었던 법률관련 자료의 경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적어도 이들 자료들은 각 시기 총독부가 제정했던 법령의 정치적 성격이나 입법취지 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유용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조선총독부가 한국사회에 대해 실시했던 각종 법령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하여 총독부 주변의 관련단체들이 발행했던 잡지의 내용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朝鮮總督府月報』·『朝鮮彙報』·『朝鮮』·『朝鮮總督府官報』

崔鍾庫, 『韓國法學史』 서울: 博英社, 1990.

- 柳永烈, 「한국에 있어서 근대적 政體論의 변화과정」 『國史館論叢』103, 2003, 12.
- 鈴木敬夫, 『法을 통한 朝鮮植民地支配에 관한 研究』 서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9.
- 鄭晉錫, 『한국언론』 서울: 나남신서, 1990.
- 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 經濟研究室 編, 『朝鮮彙報 分類總目錄』京城, 1935.
- 汀霞, 「朝鮮新聞發達史」 『新東亞』, 1934. 5.
- 최종고, 법학협회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한말과 일제하 ‘법학협회’의 활동」 『에산학보』2, 1982.
- 鄭晉錫, 『韓國言論史研究』 서울: 一潮閣, 1983.
- 韓國雜誌協會, 『韓國雜誌總攬』, 1972.
- 정혜경, 『일제말기 조선인 강제연행사의 역사』 서울: 경인문화사, 2003.
- 姜東鎭, 『日帝의 韓國侵略政策史』 서울: 한길사, 1984.
- 김민철, 「식민지통치와 경찰」 『역사비평』24, 1994.
- 잡지협회, 『한국잡지 100년』, 1995
- 桂勳模 『韓國言論年表』 서울: 관훈클럽 永信研究基金, 1979.

● 투고일 : 2003. 3. 10

● 심사완료일 : 2004. 5. 4

● 주제어(keyword) : magazine(雜誌), modern law(근대적 법률), constitutional system (헌정체제), Chosun Chongdokbu(조선총독부), Monthly Report of Chosun Chongdokbu(『朝鮮總督府月報』), Chosun Huibo(『朝鮮彙報』), Chosun(『朝鮮』), legislation intention(입법취지)